

[별표 2] <개정 2017. 5. 29.>

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(제41조의4제1항 관련)

종류	범위
자연생태 체험사업	1. 우수 경관지역, 식물군락지, 아고산대, 하천, 계곡, 내륙습지 등 육상생태계 관찰활동 2. 공원 내 갯벌, 사구, 연안습지, 섬 등 해양생태계 관찰활동 3.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탐방 및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전·복원 현장 탐방
문화생태 체험사업	1. 전통사찰,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큰 건조물, 절터, 성터, 옛 무덤 등의 답사 2. 지역을 대표하는 연극, 음악, 무용, 놀이, 전통생활양식 등의 체험
농어촌생태 체험사업	1. 공원 내 농어촌 마을의 문화·생활 체험 2. 공원 내 농어촌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및 특산물을 활용한 생태체험
건강생태 체험사업	1.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 2.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
부대사업	1. 전문가 양성 및 교육·홍보 2. 대상지의 조사 및 모니터링 3.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4.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5. 그 밖에 자연공원체험사업에 필요한 사항